참고자료. 터빈 · 발전기 검사주기완화 건의내용

The Recommendation to the Gavernment for Extension of Inspection Valitity of a Turbine Generator

1. 전기사업법상의 정기검사시기 한일 비교 및 검사시기 완화 건의(안)

한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 6				일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91조(법 54조 관련)		
구 분	대 상	검 사 시 기		검사 시기 (한일 비교용)	대 상	기기별 검사시기
		현 행	개정건의(안)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기력 · 원자력 · 내연력 가스터빈 발전소 및 수력(양수) 발전소	(1) 중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2년마다 2월전 5월후	4년마다 6월전후	7~8년마다 1년 이내	<91조 1호> (1) 중기터빈 (원자력발전소이외의 것에 한함)	운전 개시된 날 또는 정기자주검사가 종료된 날 또는 정기검사가 종료된 날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에서 4년을 초과하지 않은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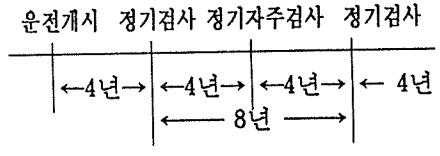
	(2) 가스터빈 보일러 · 열교환기 및 발전기 계통	1년마다 2월전 5월후	2년마다 6월전후	2~3년마다 1년 이내		
	(3) 수차 발전기 계통 및 수입관로	4년마다 2월전 후	4년마다 6월전후	-		
2. 자가용 전기설비 가. 발전설비 기력 · 원자력 · 내연력 및 가스터빈 발전소(비상용예비 발전설비 제외)	(1) 중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발전기계통 포함)	2년마다 2월전 5월후	4년마다 6월전후	7~8년마다 1년 이내 (발전기 제외)	(2) 가스터빈 (가) 출력 1만키로 왓트 미만의것 및 가스터빈 작동용 공기가열기	운전개시일, 정기자주검사 종료일 또는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서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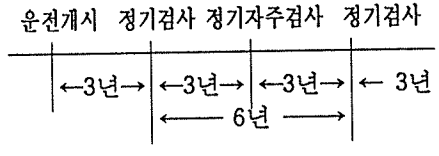
	(2) 가스터빈(발전기계통 포함) · 보일러 열교환기(다만, 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것을 제외)	1년마다 2월전 5월후	2년마다 6월전후	2~3년마다 1년 이내	(나) 출력 1만키로 왓트이상의 것 및 가스터빈 작동용 공기가열기	운전개시일 또는 정기자주검사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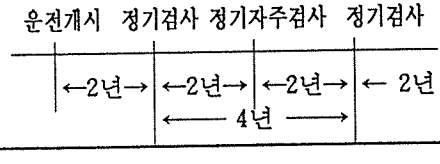

					(3) 보일러 · 독립과열기 · 증기저장기	전 (2)(나)와 동일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 병원 · 공연장 · 호텔 · 대규모소매점 · 도매센타 · 예식장 · 지정문화재 · 단란주점 · 목욕탕 ·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75Kw이상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2년마다 2월전후	4년마다 2월전후	전기공급자가 조사하여 개선통지 또는 지정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하여 개선통지 (4년 1회이상)	(4) 연료전지용 개질기	운전개시일 또는 정기자주검사 종료일 또는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1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시기
	(2)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서비스사업자의 수용설비	2년마다 2월전후	4년마다 2월전후	상 동	(5) 원자력발전소에 속하는 증기터빈	운전개시일 또는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서 1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시기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이상 수전설비 및 75Kw 이상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3년마다 2월전후	4년마다 2월전후	상 동	(6) 발전용원자로 및 그 부속설비(원자로 본체, 원자로 냉각계통설비, 계측제어계통설비, 연료설비, 방사선관리설비, 폐기설비, 원자로격납설비, 보조보일러설비, 비상용예비발전설비 등)	운전개시일 또는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1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시기